

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위한

# 재정준칙 도입방안

 기획재정부



#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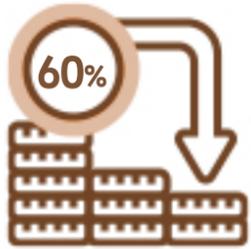
##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재정준칙 설계

### 한도 계산식

$$\left\{ \frac{\text{국가채무비율}}{60\%} \right\} \times \left\{ \frac{\text{통합재정수지 비율}}{-3\%} \right\} \leq 1.0$$

\* 국가채무 비율이 60%를 상회할 경우 통합재정수지를 -3%보다 축소하여 기준 충족

## 도입전략1: **준칙성**



### 국가채무 비율 기준을 60%로 설정

현재 국가채무 수준,  
중장기 전망,  
고령화 속도 등 감안



###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-3%로 설정

국제기준에 맞추어  
사회보장성기금\*까지 포함한  
'통합재정' 관점에서  
재정 관리

\*(국민연금, 사학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


### 한도 초과시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 의무화

지출 효율화, 수입 증대 등  
국가채무, 재정수지에 대한  
구체적인 관리방안  
포함

## 도입전략2: 보완완성



### 위기시 적용 면제,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공제 후 점진 가산

- 전쟁·대규모 재해·글로벌 경제위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, 한도 적용을 면제
- 위기 대응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한도 계산시 1차 공제 후 3년에 걸쳐 25%씩 가산해 나가고, 4년차부터는 전부 반영

\*채무비율 증가분 반영 비율: (위기시)0%, (1년차)25%, (2년차)50%, (3년차)75%, (4년차~)100%



### 경기둔화시 통합재정수지 기준 완화

- 경기둔화 판단시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%p 완화하여 경기대응 뒷받침

-3 → -4%

## 도입전략3: **실효성**



**코로나 상황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 '25회계연도 부터 적용**

유예기간 동안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을 통해 재정준칙 이행 담보



**한도는 시행령에 위임, 5년마다 재검토**

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산식 등 수량적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5년마다 재검토



**재정건전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보강**

재정부담 수반 법률안 제출시 구체적 자원조달방안 첨부

초과세수 등 발생시 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 확대

30 → 50%